

#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6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2013. 2

제출자 중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울산우정 혁신도시 전 지역 건축물 등을 자문대상 시설물로 확대 지정하고, 도시디자인 자문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아름답고 품격 높은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도시디자인위원회 자문 대상시설물 개정 (안 제12조제4항·제5항)
  -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설계공모,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, 대안입찰·일괄입찰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도시디자인위원회 자문대상에서 제외
- 나. 도시디자인 자문대상 시설물 범위 및 기준 정비 (안 “별표 1”)
  - 울산우정 혁신도시, 공공기관 건축물을 도시디자인위원회 자문대상 추가
  - 도시 구조물 및 가로 시설물의 자문대상 면적, 길이,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

## 3. 근거법규 : 따로 붙임

- 가. 「울산광역시 건축 조례」 제6조·제7조
- 나.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제50조
- 다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·제95조
- 라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## 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## 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 조치사항 : 해당 없음
- 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 없음
- 다. 성별영향 분석 평가 : 원안 동의 (사회복지과)
- 라. 입법예고 : 2012. 12. 24 ~ 2013. 1. 14(의견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처리함)

- 1) 제출자 : 대한건축사협회 울산광역시건축사회
- 2) 입법예고안 : 도로 폭이 20m 이상인 도로변 신축·증축 건축물
- 3) 제출의견 : 도로 폭이 20m 이상인 도로변의 3층 이상 신축·증축 건축물
- 4) 반영 여부 : 미 반영
- 5) 사유

- 도시디자인위원회는 건축물 디자인 뿐 만 아니라 대지와 주변 환경과의 관계,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,
  - 도시 가로경관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파사드 집합에 의해 형성되어지며, 도시경관의 시각적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써,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 범위에서 보여지는 건물의 파사드는 매우 중요함.
  - 특히, 보행자 등의 시야 범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고층 건물 또는 고층 건물의 저층부보다 저층 건물의 파사드이므로,
  - 건물의 층수나 규모가 작다고 자문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금회 조례 개정 시에는 반영이 불가하며,
  - 앞으로 자문 소요기간 및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임.
- ※ 파사드(facade) :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가 있는 정면부로서 건물 전체의 인상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곳

- 6) 회신일 : 2013. 1. 21

#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6호 중 “도시디자인사업 추진”을 “도시디자인”으로 하고, 같은조제4항 중 “울산광역시중구”를 “「울산광역시 건축 조례」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설계공모 (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제50조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)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, 대안입찰·일괄입찰 (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 및 제95조에 따른 발주방식)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  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【별표 1】 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(제9조 및 제12조 관련)

### 건축물

분 류	시 설 물 종 류
공 공 건 축 물	가. 울산광역시중구에서 발주하는 건축물 나. 공공도서관, 문화 및 집회시설, 노유자시설, 교육연구시설 (단, 교육청에서 건립하는 학교는 제외) 다. 『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물
민 간 건 축 물	가. 도로 폭이 20m 이상인 도로변 신축·증축 건축물 나. 그 밖의 6층 이상 신축·증축 건축물 다. 울산우정 혁신도시 내 건축물

※ 그 밖에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 도시디자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

### 도시 구조물

분 류	시 설 물 종 류
도 시 시 설 물	가. 교량 나. 고가차도 다. 도로에 설치하는 길이 100m 이상의 보도
도 로 부 속 시 설 물	가. 보도육교 나. 대형 공사장 울타리 다. 도로에 설치하는 길이 10m 이상의 방음벽, 석축 및 옹벽 라. 도로에 설치하는 10주 이상의 가로등(배전함 포함), 보안등, 도로명판 마. 지하도, 지하상가 등의 설치에 따른 지상 환기구 및 캐노피 등 지상 구조물 바.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

가로 시설물

분 류	시 설 물 종 류
문화관 시 설	가. 관광안내소 나. 관광안내도 및 관광안내 표지판 다. 동상·기념비, 상징탑 등 라. 표석
가로녹 지 시 설	가. 가로 녹지대 나. 분수대 다. 도로에 설치하는 20본(개) 이상의 가로수 보호덮개 및 가로 화분대
교통관 련 시 설	가. 자전거 보관대 나. 100m 이상 설치하는 보도책 다. 20개 이상 설치하는 보행인 안내표지판, 주차장 안내표지판, 반사경, 블라 드, 정류소 표지판 라. 도로에 설치하는 택시·버스 등 대중교통 승객 대기시설 및 주차장 관리소 (박스형)
환경관 리 시 설	가. 환경미화원 대기소 나. 공중화장실 다. 도로에 설치하는 20개 이상의 휴지통, 맨홀, 분리 수거함
기 타 시 설 물	가. 공공시설 담장 나. 가로 판매대 다. 구두 수선대 라. 전망대 마. 도로에 설치하는 20개 이상의 벤치, 게시대, 게시판 바. 벽화 사. 광장, 공영주차장, 하천, 공원(삼지공원 포함)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(신설 하는 경우에 한함)

# 의안심사보고서

## (의안번호 962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2. 심사경과

- 제출연월일 : 2013. 2. 7.(목)
-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회부 : 2013. 2. 8.(금)
- 위원회심사 : 2013. 2. 21.(목)

### 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박용석 건설도시국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울산우정 혁신도시 전 지역 건축물 등을 자문대상 시설물로 확대 지정하고, 도시디자인 자문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아름답고 품격 높은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함

#### 나. 주요골자

- 도시디자인위원회 자문 대상시설물 개정 (안 제12조제4항·제5항)
  -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설계공모,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, 대안입찰·일괄입찰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도시 디자인위원회 자문대상에서 제외
- 도시디자인 자문대상 시설물 범위 및 기준 정비 (안 “별표 1”)
  - 울산우정 혁신도시, 공공기관 건축물을 도시디자인위원회 자문 대상 추가
  - 도시 구조물 및 가로 시설물의 자문대상 면적, 길이,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

### 4. 근거법령

- 가. 「울산광역시 건축 조례」 제6조·제7조
- 나.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제50조
- 다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·제95조
- 라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### 5. 검토보고(전문위원 : 김권수)

도시디자인위원회 자문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여 품격 높은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 주요조례개정 내용은 제12조제5항을 신설하여 설계공모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, 대안입찰·일괄입찰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자문대상에서 제외하고,

“별표 1”의 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 중 울산우정혁신도시 내 건축물을 추가 하고 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의 자문대상 면적, 길이,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안 가결함이 필요함.

다만 “별표 1”의 교통관련시설 “나”항 중 “보도책”은 「도로안전 시설 설치 및 관

리 지침」에 의거 “방호울타리”로 정정 검토 바람.

**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**

“별표1”의 교통관련시설 “나”항 중 “보도책”의 용어는 국토해양부의 「도로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」에 의거 “방호울타리”로 수정하여 가결함

개정안		수정안	
<p><b>【별표1】</b> 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(제9조 및 제12조 관련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가로 시설물</p>		<p><b>【별표1】</b> 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(제9조 및 제12조 관련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가로 시설물</p>	
<b>분류</b>	<b>시설물종류</b>	<b>분류</b>	<b>시설물종류</b>
교통관련시설	가. 자전거 보관대	교통관련시설	가. (개정안과 같음)
	나. 100m 이상 설치하는 <u>보도책</u>		나. ----- <u>방호울타리</u>
	다. 20개 이상 설치하는 보행인 안내 표지판, 주차장 안내표지판, 반사경, 블라드, 정류소 표지판		다. ~ 아. (개정안과 같음)
	라. 도로에 설치하는 택시·버스 등 대중교통 승객 대기시설 및 주차장 관리소(박스형)		
	마. ~ 아. <삭제>		